

이사회 규정



이사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정관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 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,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을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회장 또는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 성)

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 장)

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직무대행에 관하여는 정관 제37조 규정에 따른다.

제 3 장 회 의

제 6 조 (종 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첫째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단,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회장이 소집한다. 단, 이사회회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각 이사는 이사회회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때 이사회회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. 만일 위와 같은 이사의 요구에 이사회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회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 (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, 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제1항의 목적사항에 관하여서만 의결을 할 수 있다.

제 9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 상법 제397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0 조 (관계인의 출석)

- 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,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1 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, 이사회 의장 또는 소집권자는 부의사항에 대한 법적 사항과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부의한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
- (9) 이사,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(12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
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4) 이사의 보수
- (15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공동대표의 결정
- (3) 지점의 설치, 이전 또는 폐지
- (4) 신주의 발행
- (5) 사채의 발행 및 사채발행의 대표이사 위임
- (6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7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8) 이사의 경업, 이사의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,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
- (9) 분기배당

- (10) 해외증권의 발행
 - (11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- (12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해임
 - (13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한 재결의
 - (14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
 - (15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 - (16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- (17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 - (18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 - (19) 재무제표의 승인
 - (20) 배당의 결정
 - (21)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 및 소각
3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규모 내부거래
4.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회사의 최대주주 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
5. 기타 법령 또는 정관,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② 이사회 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
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2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의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회는 제11조 제1항

제4호의 사항은 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3 조 (위 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자문위원회)

이사회는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자문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 15 조 (경영진)

① 정관 제41조 규정에 의거 회사는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.

② 경영진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경영진은 명예회장,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로 구분하며 명예회장, 회장, 부회장, 사장 및 경영진 중 대표이사는 최고경영자라 칭하고 경영진은 이사회의 이사가 될 수 있다.

- 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정한다.
- ⑤ 각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, 연임 될 수 있다.
- ⑥ 경영진의 급여 및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경비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⑦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⑧ 경영진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.

제 16 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이사등의 의무)

- ①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,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1.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
 2.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
3.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
- ④ 이사는 이사회 승인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.
1.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
 2.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
- 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.

제 19 조 (이사회 지원)

회사는 이사회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부 칙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